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3256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입찰방해

피 고 인 1.가. 주식회사 A
2.가.나.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인구, 박종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09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유



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

 대법관 김선수 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095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입찰방해
피 고 인	1.가. 주식회사 A 2.가.나. B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최정민, 김준선(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화(피고인 주식회사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제혁, 이연주, 김벼리, 박민정, 홍여정 법무법인 청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성복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인구, 노승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3650, 2020고단 790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7901 사건 부분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C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2. 6. 2. 항소를 취하하였고, 검사도 원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¹⁾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찰담합 행위에 관하여 D, E, F 등으로부터 이

1) 이하 각 항에서는 해당 피고인만을 '피고인(복수인 경우 '피고인들')'이라고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이 름만 기재한다.



사건 각 입찰담합 행위 진행 여부, 그 과정 및 세부적인 내용 등 입찰담합이라고 보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A²⁾의 사업 심의구조 등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공공고객본부장인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담합 행위가 진행될 수 있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실제 담합행위에 관여한 D, E, F 등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담합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쟁사의 회선임차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입찰담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범죄일람표³⁾ 순번 1 사업은 피고인의 전임자인 C, G의 승인으로 진행된 것이고 D는 2015. 12. 15. 1차 입찰이 유찰되었던 터라 담합인 부당공동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입찰방해도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한바 없어 피고인에게 공모행위 내지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양형부당)⁴⁾

2) 이하 'A'라고 하고, 이 사건 피고인으로서 언급할 때는 다시 위 명칭으로 지칭한다.

3) 원심판결문 별지의 2번째 범죄일람표이다(이하 범죄일람표는 이 범죄일람표를 뜻한다).



원심은 양형이유에서 직원들에 대한 윤리준법교육이 외부에 보유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입찰담합 등의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실행하여 왔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원심의 형(벌금 2억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점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 7901)

○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소속 G, C(이상 기업사업부문장, 공공고객본부장 등 임원), D, E, H, I, J, K, L, M, L(이상 공공고객3담당 산하 직원), F, N, O(이상 공공고객1담당 산하 직원) 등 임직원들 및 P, Q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사업의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한 다음 낙찰예정사가 유찰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예정사가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5.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7건(수주액 합계 116,592,575,32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사업 중 A는 순번 1번, 2번, 3번, 4번(1분류 사업), 5번, 7번 사업을 합계

4)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서 양벌규정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누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지에 따라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적용법조 부분에 위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96,147,575,3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고, Q는 순번 4번(2분류 사업), 순번 6번 사업을 합계 20,4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였으며, 그와 같은 합의를 통해 각 사업의 수주회사는 개별 사업의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여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사들에게 담합의 대가로 합계 28,451,038,4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상호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와 같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투찰하는 등으로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사들에게 합계 28,451,038,4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상호 배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원심은 D(前 A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3담당)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B에게 VDC 서면심의 내용이 이메일 형태로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내부 실무 상 'A, Q, P 간 특정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과 'A가 수주받을 경우 회선 임차료(매출분배)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각 보고만으로도 공공고객본부장인 피고인 B로서는 A, Q, P 간 담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는 D로부터 위 순번 1 담합행위를 보고받고 이미 경쟁사와 담합행위를 모의하고 피고인 C, G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2차 입찰 및 수의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 순번 1 담합행위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원심은 D, E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에게 VDC-B 서면 심의 내용이 이메일 형태로 보고된 점, 피고인 B이 타사 회선임차비 지출 서류에 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E 또는 D를 통해 경쟁사와의 담합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2016. 3. 8.자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

원심은 F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O의 검찰에서의 진술, 단일 R 심의 결과보고서에 타사 회선 임차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를 통해 경쟁사와의 담합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범죄일람표 순번 4, 5에 관하여

원심은 D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I, J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R 심의 결과보고서에 타사 회선 임차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타사 회선임차비용 지출 서류에 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를 통해 경쟁사와의 담합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범죄일람표 순번 6, 7에 관하여

원심은 D가 이 부분 담합 사실을 B에게 보고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M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앞서 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담합행



위와 입찰과정을 종합하면 순번 6, 7사업도 본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본건 사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매주 주간회의에서 수주계획,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담합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없고, 피고인 B의 승인이 없었다면 본건 사업 관련 담합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하여도 보고를 받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686 판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등 참조).

2) D, E, F 등의 진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로 D, E, F 등의 진술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임본부장이었던 공동피고인 C의 후임으로 이 사건 공공사업 영업 분야를 잘 모르는⁵⁾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부임하자, D 등은 걱정이 많고 꼼꼼한 스타일의 피고인에게 담합해온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였던 사실⁶⁾을 비롯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② 이들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도 모호하고, 주요부분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상반된 뿐만 아니라, 그 진술변복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③ 피고인을 제외할 경우 D 등은 이 사건 담합행위와 관련한 최종책임자 및 실무자로서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모호하게 보고한 사실을 들어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략한 일회성 보고를 받고서는 곧바로 담합행위를 승인하고, 문제가 될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전임본부장, 전임부문장은 물론 자신의 상급자인 S 부문장과 상의하지도 아니하였던 점⁷⁾ 등의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

5) 피고인은 민간부분 상무로 근무하였었고, 직전에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윤리경영실에서 사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다(아래 표의 D 진술내용 참조).

6) 아래 표의 D, T 등의 진술내용 참조.

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는 전임본부장 C에게는 타사와 입찰 담합을 협의하는 시점부터 과정마다 사전 보고하고 전임부문장 G에게도 보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문서를 보여주며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만 구두로 1회성으로 간략히 보고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좀처럼 수궁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의 보고는 구체적인 담합행위나 담합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피고인이 담합행위를 스스로 추측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의 추상적인 보고였을 가능성이 크다.



운 각 보고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가) 진술인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 일람표	진술 단계	진술인	주요 내용	증거
순번 1	공정위	U	○ 담합 내용을 T 팀장에 보고했다. 위 팀장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	841면(순번 46)
	공정위	T	○ 담합 내용을 전부 D에게 보고하였다.	853면(순번 47)
	검찰 (대질) U T	T	문 U는 본건 담합 진행사실을 T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T은 상급자인 D에게 모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했는데 D는 상급자인 본부장(C, B)에게 보고했고, 위 본부장들은 부문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진행하였겠네요 답 보고체계는 맞는데 저희는 D까지만 보고했고 승인받았다. D가 그 상급자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저희도 알 수 없다.	2,747면(순번 138)
			제가 생각할 때도 최소한 본부장까지는 보고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보고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당들이 보고했는지 모르겠다.	2,747면(순번 138번)
	공정위	D	문 진술인은 앞서 언급한 7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사와 협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나서 진술인의 상급자에게 이와 같은 보고를 하였나요. 답 하지 않았다.	982면(순번 64번)
	검찰		문 상부 보고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요 답 사실 제가 A에서 30년 근무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갑자기 2017. 5. 24.에 저에 대한 징계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보직을 해제하고 이후 권고사직까지 당했다. 억울한 부분도 있었는데,	2,697면(순번 134번)



			퇴직을 하였고, 그 이후 공정위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상부 보고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했다. 그것도 오늘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계기도 있었다. ○ 시간이 오래 지났고, 제가 퇴직 이후 건강문제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2,698면 (순번 134번)
		D	○ 저는 T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 새로 피고인이 부임하였다. 그래서 2회 유찰을 받고 수주하는 경위 및 배경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이 공공고객 영업에 대한 이해도나 답합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없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 중간에 본부장 인사이드가 있어서 새로 부임한 피고인에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고 다음에 진술을 하고 싶다. ○ 제가 관여한 사업들도 모두 사전에 답합한 사실에 관해 보고를 했다.	2,760면, 2,768면, 2,770면~ 2,772면 (순번 139번)
	검찰 (대질) D T	T	○ 이 사건에 대해서는 D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새로 왔는데, 그 분이 영업 쪽 일을 안 해보셨을 뿐 아니라 매우 걱정이 많고 꼼꼼한 스타일이라 D가 엄청 고민하는 것을 보았고, 그 고민을 나에게도 토로하였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D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모르지만, 결국 당초 계획했던 대로 2회 유찰 끝에 수주하였으니 D가 피고인에게 보고해서 수주 진행된 것이라 생각된다. ○ 공정위 조사에서 D에게 보고한 사실은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은 진술하지 못했다. 오늘은 D와 조사를 같이 받으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이 나서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도 있다.	
	검찰 (대질)	D	○ 피고인이 답합을 언급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면서 추궁하지는 않았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인데, 피고	2,854면 ~2,856면



	D E		인이 부임한 이후 제가 보고한 제일 규모가 컸던 사업이고, 피고인도 수주 실적을 내야했기에 담합을 허용했던 것 같다. ○ 문 진술인의 보고 내용만으로 담합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당연히합니다. 매출 배분을 하고 입찰에 경쟁사가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단독 입찰하여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 받으셨으니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 1차 유찰 당일에 직접 보고했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번만 보고했다. ○ 문 수주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였는가요 답 2차 유찰 직후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2번째 단독 입찰하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했다. 통상 오후 5시에 입찰 마감이 되는데, 저희만 단독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순번 144)
	검찰 (대질) 피고인 D F E	D	○ 본건 입찰에 있었던 담합행위에 대하여 당시 본 부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 정기인사에게 본부장이 피고인으로 변경된 후 피고인에게도 위 사업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 본부장이 주재하는 업무보고 시간에는 공공고객 본부 산하 모든 담당과 팀장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수주계획, 수주결과에 대한 정상적인 보고만 하였고, 담합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 본건 보고는 혼자 한 것으로 기억한다. ○ 피고인이 이전에 사내 감사 업무도 했어 담합 보고를 하기가 꺼끄러워 고민을 많이 하다가 1차 유찰이 된 후 유찰결과를 보고하면서 먼저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가 유찰 경위 및 수주 계획, 매출배분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 피고인이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매출을 배분해	5,057면 (순번 252번)



			주면 개네들만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제가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알았다. 잘 진행하라”고 하면서 “다음 입찰일이 언제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검찰 (대질) D E	D	○ 저는 분명하게 피고인에게 별도로 찾아가 경쟁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 사업을 수주하고 그러한 담합의 대가로 회선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 제가 직접 담합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 그러나 보고받은 내용 등을 통하면 회선 임차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피고인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발주처 예정가격 대비 100% 가깝게 투찰을 하였고, 수주 이후 거액의 타사 회선 임차비용이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 사전에 보고받아 당연히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직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보면 담합 정황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고, 피고인이 위 메일들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였다.	5,871면 ~5,880면 (순번 282번)
	공정위	E	○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사와의 협의 과정을 D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보고했다. D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다.	912면~913면 (순번 56번)
순번2	검찰 (대질) D E	E	○ D가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했다. ○ 당시(3.8.경) 서울로 출장을 와서 경쟁사 담당자들을 만나 매출 분배 금액, 투자 부담 비용액을 확정지었는데, 그 날 바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했다. ○ 미팅이 끝나고 광화문 사무실에 와서 D를 찾았는데, 자리에 부재중이어서, 피고인을 만나 “저희가 수주하고 경쟁사들은 회선 임차를 통해 매출을 분배받고 투자비용도 부담하기로 협의했다”라고 보고했다. ○ 공정위 조사에서는 담당 사무관이 묻는 내용만	2,859면 ~2,861면 (순번 144번) 5,067~5,068면(순 번 252번)



			답변했다. 그때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	
	검찰 (대질) D T	D	○ 우정사업본부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상급자에게 보고 드렸다.	2,773면 (순번 139번)
	검찰 (대질) D E	D	○ 본건 진행 경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정했다는 내용을 E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가서 30분 가량 보고했다. 첫 보고 시 경쟁사들과의 담합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고, 2016. 2. 초경에 E이 서울로 출장 와서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후 E을 내보내고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담합정황을 보고했다. ○ E이 2016. 3.경 다시 서울로 출장 와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을 들었고, 이후 경쟁사의 본부장 등과 만나 미팅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 본건에서도 유찰 결과 자체는 보고했는데, 이미 사전에 담합을 통해 수주한다는 계획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서 유찰 경위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2,857면~ 2,859면, 2,862면~ 2,863면 (순번 144번)
순번 3	공정위	F	○ 당시 저의 상급자는 피고인이었는데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공공고객본부 안에 4명의 상무급 담당이 있고 위 담당마다 4-5개 정도 팀들을 관할하고 있어 워낙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었기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보고하지 않는다.	993면 (순번 67번)
	검찰 (대질) F N O	F	○ 입찰이 있기 전 2016. 3. 중순 내지 말경 피고인에게 서서 구두로 V기관 관련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렸다. 'Q가 저가 투찰을 구실로 협박하고 있다. 발주처에서도 기존 사업인 Q의 회선을 임차하여 기존 체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Q의 기존 회선을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안서에도 위 회선 임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3,021면~ 3,023면(순번 159번)



			○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고 내용이 타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한다. ○ 그때 1번 보고한 이후에 추가 보고는 없고, 사업 수주 결과는 주간보고 등으로 보고되었다. ○ 구두로만 보고하였고 별도 문서를 만들어 보고한 적은 없다. ○ 공정위에서는 본부장까지 책임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아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당시 작성한 서류나 자료는 없고, 보고할 때 혼자 했기 때문에 다른 증인은 없다. 다만 분명히 보고한 것은 맞다.	
	검찰 (대질) F D E	F	○ 문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을 때 경쟁사와 사전에 입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A가 향후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피고인에게 보고 시 V기관 사업이 발주처의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수익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Q가 60% 투찰을 제시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다.	5,036면~ 5,037면, 5,041면(순번 249번)
	검찰 (대질) 피고인 F D E	F	○ 저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피고인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 V기관 사업 건에 대하여 당시 본부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 저는 여러 차례 보고하지는 않았고 입찰이 있기 전에 한 번 경쟁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 제가 피고인에게 발주처에서 타사 회선을 임차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고, 제안서에도 위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고하였지만 직접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 ○ Q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위 경쟁사의 회선을 임차하겠다는 보고만 가지고는 담합을 하고 있다고	5,054면, 5,057면, 5,070면, 5,072면 (순번 252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도 담합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생각한다.	
순번 4, 순번 5	공정위	I	○ D가 보고 당시 경쟁사 상호간 합의를 거절하면 합의는 결렬되는 것이었다.	947면(순번 60번)
	검찰 (대질) I J K	K	○ 제가 I과 D의 검토를 받아 R 부서에 심의요청을 하였다. ○ (5번 사업) 1차 투찰일이 2016. 8. 23.경이었는데, 8. 17.경 서면심의를 받은 결과 추진 승인을 받았고 당시 투찰율 62%로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 받았다. 그런데 1차 투찰결과 유찰이 된 후 2차 투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P에 매출을 배분해주는 것으로 담합을 하고, 2016. 9. 6. 투찰에서 98% 투찰율로 투찰을 하고 P에 6억 원을 배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내용을 반영한 심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016. 9. 23. 다시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2016. 9. 27. 투찰율 98%을 반영한 매출액 22억 원과 회선임차비용 6억 원을 반영하여 심의위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834면~ 2,835면(순번 143번)
		I	○ 임찰참여여부나 투찰율을 얼마나 할지 등은 사전에 심의 받아서 진행하고 영업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 D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했다. ○ D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그 보고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적은 없다.	2,838면~ 2,839면 (순번 143번)
	검찰 (대질) D E	D	○ (순번 4, 5번) 본건 사업들은 담합 계획과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 (순번 4번) 본건 입찰 공고가 나기 전인 2016. 3.경으로 기억하는데 I이 'A와 Q가 기존 사업자이니 P에는 매출을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고	2,864면~ 2,867면 (순번 144번)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자 이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매출액에는 변동 없느냐’라고 물어 ‘투찰율을 높게 하여 입찰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지는 않고 기존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알았다. 신경써서 마무리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라’라고 말했다. ○ 문 그 후에 후속 보고는 하였는가요 답 이 사업은 유찰 없이 바로 수주를 하였고, 수주 결과만 보고 드렸다. ○ (순번 5) 이 사업에 대하여도 당연히 보고를 드렸다. 본건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후 담당 공무원의 항의로 다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승인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피고인은 별말 없이 승인했다. ○ 문 입찰 경과를 보면 촉박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담합을 진행하였던 것인가요 답 예. 급하게 경쟁사들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게도 보고 했다.	
순번 6, 7	검찰 (대질) D E	D	○ 제가 그 무렵 내부 감사를 받고 있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감사 외에도 별건 사업에 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다. 그래서 제 밑에 있던 직원들도 저한테 보고를 잘 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 위 사업들의 경우 담합 진행 경위 조차 팀장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2,867면~ 2,868면 (순번 144번)
	검찰 (대질) D E F	D	○ 본 사업들과 관련하여 제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담당자들이 보고하였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 M이 저에게 보고를 한 것이 맞다면 저나 M이 피고인에게도 보고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5,079면~ 5,080면(순번 252번)
	검찰	D	○ 본 사업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합사실을 알	5,891면



	(대질) D E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메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순번 282번)
	검찰 (대질) M L	M	○ 당시 D에게 보고했다. D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였는지는 모르겠다. ○ 팀장이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위 사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건은 저희가 수주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D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경쟁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회의시간이 아니라 따로 본부장에게 담당이 별도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들과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별도 보고를 한 기억은 없다.	4,907면~ 4,908면 (순번 243번)

나) D, F, E은 위와 같이 모두 2018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가 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 조사를 진행할 당시 D, F은 2019. 5.경 위 감사 조사에서도 각각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경쟁사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F)',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D)'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⁸⁾ 그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① D는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회사 관계자가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F은 '공정위에서는 본부장까지 책임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아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E은 '공정위 사무관이 이에 관해 묻지 않아 진술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A에서도 위 관계인들의 담합 가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사

8) 공판기록 중 2023. 4. 18.자 사실조회요청 관련 답변서 참조.



에 착수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던 중이었으므로⁹⁾ F, E, D는 피고인을 제외한 최고책임자 및 실무자인 자신들이 징계수위를 낮추고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들은 담합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업무평가 및 성과급 영향을 지목하였듯이 스스로 담합행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각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진술을 되풀이하며 추측과 의견을 덧대어 진술한 경우도 있는 점,¹⁰⁾ ④ D는 특히 2018. 1. 31.경 A를 퇴사한 이후 2018. 8. 31.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데 있어 별다른 장애 요소는 없었음에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며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감안하면, 이러한 진술번복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¹¹⁾

다) 구체적으로 순번 1 사업과 관련하여, D는 검찰에서 본건 1차 유찰 당시인 2015. 12. 15.경 담합 관련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5. 12. 4. 인사발령을 받아 공공고객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 12. 7.부터 공공고객본부로 출근하였으며, 2015. 12. 18.부터 공공고객3담당 D로부터 첫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았고, 2015. 12. 21. 피고인이 주재하는 주간회의도 처음으로 열렸다.

그런데 ①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그 전에 피고인에게 담합행위

9) 공판기록 중 2023. 4. 18.자 사실조회요청 관련 답변서 참조.

10) D는 원심에서도 "저는 처음 부임해 오셔서 100억 대가 넘는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추측에 가까운 진술 내용을 보이고 있다(공판기록 679면).

11) D, E, F 등은 장기간 영업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D는 원심법정에서 "법보다는 매출이 더 중요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704면). 이들은 매출을 목표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를 의심할 만한 단서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영업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전에는 윤리경영실에서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상호간 입장이 동일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D의 진술로부터 확인된다.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공공고객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 윤리경영실에서 감사팀장 및 윤리경영2담당(상무보)로 3년 7개월 정도 일하며 A 내부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장기간 감사 업무를 담당한 점, ③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담합행위 관여로 회사 내부 징계 내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실익이 크지 않았고, 영업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도 없어 영업 부서의 업무 관행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④ D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공고객 영업에 대한 이해도나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없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¹²⁾ ⑤ T도 같은 조사에서 '피고인이 영업 쪽 일을 안했고 매우 꼼꼼하고 걱정이 많은 업무 스타일이어서 D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위와 같은 상황에서 D는, 피고인과 상호간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감사 부서 출신인 피고인의 성격, 태도, 업무 스타일 등 배경사실들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내 위와 같은 고민을 마쳐 피고인에게 위법한 담합행위를 간략하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 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담합을 승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D로서는 종전에 진행하던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사후적으로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하였을 수도 있다(오히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2015. 12. 18.까지 인사이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각 직원들과 '직원 상견례'를 하며 산하 부서들 업무 보고 일정이 잡혀있는 등 바쁜 와중이었으므로,¹³⁾ 이와 같이 중대한 담합 문제에 관해 보고받을 겨를도 없었

12) D는 원심법정에서도 "그 당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약간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자고 해서 바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652면).

13) 증거기록 5,993면~6,015면



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D는 이 부분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2019. 5. 30.자 검찰 조사, 2019. 6. 3.자 검찰 조사에서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6. 12.자 E과 대질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억이 난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을 상기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고 내용만으로 답합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냐'는 취지로 수사 검사가 질문하자 이에 답하며 D는 '당연하다. 피고인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어조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임한 직후 피고인의 업무 스타일을 두고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조차 깊게 고민하였던 D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D의 진술은 좀처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C(전임 공공고객본부장)에게는 타사와 입찰 답합을 협의하는 시점부터 과정마다 사전 보고하고 직접 G(전임 부문장)에게도 보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찰답합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 관련 문서¹⁴⁾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D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에게는 본건과 관련하여 1회만 보고하였고,¹⁵⁾ 그마저도 이미 C 으로부터 승인받아 대부분 입찰을 진행한 뒤 피고인의 별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보고 내용이었다.¹⁶⁾ 또한, D는 '답합'이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상호 이 사건과 같은 답합행위를 인식한 공범이라면 이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답합'이나 이를 지칭하는 상호간의 암묵적인 은어나 단어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

14) 증거기록 2,911면~2,916면

15) 공판기록 2021. 8. 26.자 증인 D 녹취서 35면

16) 공판기록 658면



법으로 담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직급 구조 및 직제 변동 없이 구성원만 교체된 상황임에도 D의 보고 방식이 위와 같이 달라진 것도 이례적인 점,¹⁷⁾ ③ 앞서 살펴본 것처럼 D는 피고인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미 진행된 범행에 관하여 모호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④ 피고인도 영업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D의 진술과 같은 1회 보고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알고서 단번에 수긍했을지 의문이 드는 점, ⑤ 설령 D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D의 보고를 받고 담합 정황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의 근무 이력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책임이 문제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전임 본부장 C이나 전임부문장 G, 신임부문장 S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세하게 문의했을 것임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C, G, S 등에게 문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도 담합행위에 관해 보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D는 스스로 1회만 대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심의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추가 보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는 2016. 3. 3. 09:00경 사업가치팀 W으로부터 VDC 심의 자료를 받았는데, 정작 D는 2016. 3. 3.부터 2016. 3. 4.까지 시외 출장을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에 부재하였으므로 D의 주장과 같이 위 VDC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여 피고인에게 대면 보고하였는지는 의문이다.¹⁸⁾

17) D 진술에 의하면, D는 C, G이 있던 기간에는 직접 부문장인 G에게도 보고하다가 피고인과 S이 부임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만 보고했다는 것이다.

18) 더군다나 본건 임차회선비 지출결의서는 피고인이 아닌 D가 결재하였다(증거기록 6,373면). D는 원 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 본건과 관련하여 "공공고객본부장의 승인 없이 증인의 결정만으로



위와 같이 D의 순번 1 사업 관련 진술들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이를 제외한 T, U의 각 진술도 결국 '자신들은 D에게는 보고하였지만 D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로부터 본건 사업 담합행위에 관해 보고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라) 순번 2 사업과 관련하여, D는 검찰에서 본건 관련 첫 보고 당시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 갔다가 E을 내보내고 나서 따로 담합 정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D가 부재중일 때 피고인에게 입찰담합 행위를 직접 보고한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에게 담합행위를 숨길 필요성이 낮은데도 E을 내보내고 조용하게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위 D의 진술 내용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D는 본건 사업이 '2016년 기업사업부문 10대 주요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매주 개최되는 본부장 및 부문장 업무 보고 시 보고자료에도 매번 위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회장 비서실에서도 진행상황을 체크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다'라고도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본건 수주 규모가 440억 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이어서 피고인은 발령 당일인 2015. 12. 8. 부터 미리 고객영업을 위한 일정이 잡혀 전남 나주시까지 2차례 출장에 동원될 정도로 관심이 컸던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¹⁹⁾ 사정이 위와 같다면 본부장으로서 상부에 보고되는 사업을 자세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이러한 규모의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와 담합할 수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 내용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하는바 위와 같이 본건 임차회선비 지출결의서를 D가 결재한 점, D는 본건 심의과정 VDC 결과 등을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담합행위 정황도 모두 잘 알고 있던 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승인받은 뒤 입찰담합 방식으로 본건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원심에서 단언하고 있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9) 2020고단7901 증거기록 7103 내지 7104쪽 참조.



보고만 듣고 별도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D에게 '알겠다. 경쟁사들을 믿어도 되는 것이냐'는 태도로 주의만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업무 경력이나 업무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E은 검찰 조사에서 '2016. 3. 8.경 피고인에게 'A가 수주하고 경쟁사에게는 회선 임차를 통해 매출을 분배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8. 나주 지역으로 출장을 갔고, 같은 날 점심에 나주 소재 식당에서 식사한 후 같은 날 15시 경 귀갓길에 올라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E이 원심에서 '2016. 3. 8.경 광화문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E의 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피고인의 행적이 서로 모순되고 있어 이 부분 E의 진술을 곧바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E은 원심에서 'D에게 경쟁사와의 담합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했을 당시 D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보고 과정이 생략된 채 D와 E 상호간 보고 과정만으로 본건 담합행위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 E이 자신들도 담합행위 실행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충분하다. 여기에다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한 상태인 점까지 고려하면 본건 관련 D, E의 각 진술도 그대로 취신할 것은 아니다.²⁰⁾

마) 순번 3 사업과 관련하여, F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 2023. 4. 18.자 사실조회요청에 관한 답변서를 참조하여 보면, A는 내부적으로 담합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하여 '담합실행 횟수, 개인매출' 등을 기준으로 담합 관여도를 산정하였고, 직원들 중 D, E은 가장 높은 관여도 단계인 '고'로 분류되었다. D는 다른 직원들의 관여도 점수 대비 약 10배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반복하면서 '피고인에게 V기관에서 타사 회선을 임차하도록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도 했고, 제안서에도 타사 회선을 임차하겠다는 내용을 반영 했다는 보고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F의 변경된 진술 내용과는 다르게 A가 V기관에 실제로 제출한 제안서는 'V기관에 구축된 3개 통신사의 각 회선을 A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타사회선 임차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 위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F은 피고인과 독대하여 단 1회만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담합과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고지하지는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추측성 진술을 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더욱이 원심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 표와 같이 그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담합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다음에 P가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봤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F은 스스로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따름이다).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중 해당 부분

검사 주신문

문 증인이 지금 말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으로서 A가 Q, P와 담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답 그 순간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은 모를 수도 있다는 취지인가요.

답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지금과 똑같이 진술했었고, 제가 '회선 임차'라는 용어를 말씀드리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앞선 다른 사건에서 회선 임차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선 임차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P가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은 그 순간에는 모를실 수도 있었나보다, 그런데 제가 Q가 끌어안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인지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략)

재판장 신문

문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증인이 추가로 설명해 주니 당시 피고인이 그 문제를 이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고를 끝냈다는 말인가요.

답 예.

(중략)

변호인 반대신문

문 증인은 검찰에서 ‘Q의 회선을 임차한다는 말에는 Q는 회선을 임대하고 저희 A로부터 회선임차료를 받는 대신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59. 기록 제,3022쪽),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Z 사업의 경우 입찰이 담합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회선 임차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초기 투자비용 절감 차원에서 타사 회선을 임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타사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하는 것이므로 Q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보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담합 여부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답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특히 증인은 피고인에게 ‘발주처에서도 기존 사업자의 회선을 임차하여 기존 체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Q의 기존 회선을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서에도 회선임차를 명시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 발주처 망 이원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Q의 회선을 임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F은 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담합의 세부 조건이나 사후에 담합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금액, 비율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저도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Q 회선 임차비용 금액을 알게 되었다. 대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²¹⁾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담합행위에 관한 주요내용은 제외한 채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²²⁾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순번 4 사업과 관련하여, X 사업(순번 4)의 실무 책임자인 I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D가 보고 당시 경쟁사 상호간 합의를 거절하면 합의는 결렬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D에게도 개별 사업 협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D는 검찰 조사에서 '위 사업 담합행위에 관해 경쟁사와 이미 구체적으로 담합을 협의하여 확실해진 것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1회 보고하면서 '알았다. 신경 써서 마무리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묵인 진술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D는 원심에서 'I이 본건과 관련하여 경쟁사와 담합 합의를 공고하게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보고 드리면 제가 더 혼날 것 같아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앞서 본 업무 스타일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사업 수주 결과 담보된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D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I도 D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 순번 5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D의 진술이 주요 증거이나, D는 검찰 조

21) 공판기록 755면~756면, 764면

22) 더욱이 F은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간단히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까지는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756면).



사에서 '입찰일인 2016. 9. 6. 이전 심의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가서 "매출을 경쟁사들에 나눠 주더라도 투찰액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A에서 당초 수익성이 없다고 심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기에 당시 경쟁사들과 담합 협의를 진행한 적 없었다가 발주처 담당 공무원의 항의 등으로 다시 입찰 참여 여부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담합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담합 합의가 반영되어 다시 진행된 심의 과정의 결과가 2016. 9. 27.에서야 나온 사실²³⁾을 감안하면, 2016. 9. 6.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담합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순번 6, 7 각 사업에 관하여, D는 다른 범행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언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면서도, 반면에 위 순번 6, 7 사업에 관하여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였고 M 등으로부터 담합 사실을 보고받은 기억은 나지만, A로부터 감사를 받는 상황이라 깊게 관여한 바 없고, B에게 보고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검찰 조사에서도 '제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담당자들이 보고하였다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²⁴⁾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였던 점, 아무리 감사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안이었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시간이 오래된 이전의 담합 행위보다 그 이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자신 없는 태도로 추측성으로 진술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M의 검찰진술 역시 '피고인도 항상 관심을 갖고 매주 주간회의에서 수주계획,

23) 증거기록 제2834~2835면, K의 검찰 진술조서 참조.

24) 증거기록 5,079면~5,080면



수주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기 때문에, D가 피고인에게 담합을 보고했을 것이다. 특히 순번 7 사업은 D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고, D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또한 '본부장 주재 주간회의에서 "경쟁사들이 다음번에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투찰 때는 투찰가를 더 올리려 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기억이 난다'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담합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더구나 주간회의에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고 사업별 보고가 간략하게만 이루어지는 점²⁵⁾²⁶⁾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D가 검찰 조사에서 '팀장 등으로부터 담합 경과에 대하여 보고받지도 못하여 아는 내용이 없어 본부장(피고인)에게도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밑에 있던 직원들도 저한테 보고를 잘 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도 저를 멀리하시면서 보고도 잘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6, 7 사업의 경우 담합 진행 경위조차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합니다.'라며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²⁷⁾ 등을 더하여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사업 관련 담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 외에 원심 및 검사가 제시하는 근거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입찰에 관한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점, ② 피고인이 경쟁사들과 수익을 나눠가지는 방식인 '경쟁사 회선임차'와 관련된 문서에 결재하거나 그

25) 증거기록 6,380면~6,384면

26) Y는 원심법정에서 본부 주간회의라든가 부문 주간회의는 수십 개의 사업에 관하여 개략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세세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61쪽 참조).

27) 증거기록 2,864면, 2,868면



비용지출서류를 결재한 점, ③ 주간회의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다.

가) A의 내부심의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²⁸⁾ A는 'Z' 사업, 'AA 사업', 'AB' 사업²⁹⁾ 중 하나로만 구성된 사업인 경우 이를 '단일 R 사업'(이하 '단일 R 사업'이라고 한다)이라고 부르고, 발주처가 위 단일 R 사업을 제안해 경쟁 입찰에 부칠 경우 그 응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의과정을 별도로 진행한다.

위 단일 R 사업이 'Z'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 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Z사업팀'에서 영업부서의 심의요청을 받아 관련 부서의 각 의견을 취합·분석 후 매출액과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한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그 심의 결과 수익성이 있다 판명되면 해당 입찰에 응찰할 것을 결정한다. 만일 해당 사업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복합 R 사업인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실에서 직접 사업가치결정위원회(Value Decision Committee, 이하 'VDC'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위 관련 부서(공공고객본부, 기업사업컨설팅본부, 기업사업수행본부, R부서, 계약부서, 원가부서) 소속 팀장 또는 담당 직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다(심의위원의 직급, 심의 내용 등에 따라 다시 A-B-C라는 세부 단계³⁰⁾를 거친다).

A는 영업조직이 과정을 도외시킨 채 사업 수주 성과에만 매몰될 위험을 사전에 제

28) 증거기록 3,159면~3,160면

29) A는 위와 같은 사업 분류를 'R'이라고 부르고 있다.

30) VDC-A 단계에서는 인력투입 및 발주처 제안 참여 여부 결정, VDC-B 단계에서는 응찰 여부 결정, VDC-C 단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처와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한다.



거하고자 영업조직과 독립적인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입찰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하여 위와 같은 심의 과정을 마련하였는데, 심의 과정 참석 대상은 주로 팀장급이고 간혹 D와 같은 직급들도 참여한다.³¹⁾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심의 결과만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³²⁾ 피고인이 임의로 타 부서 직원들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결정한 위 심의 결과를 좌우할 수 없는 구조였다[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상무급 이상(본부장)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 각 입찰담합 행위 대상 사업의 규모는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참석을 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상호간 담합 사실을 추단할 간접적인 사실들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담합행위를 담당한 실무자 등으로부터 달리 보고를 받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D, E, F 등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심의내용 및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담합행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와 관련하여 D는 검찰 조사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사업 관련 VDC 심의자료를 가지고 본부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³⁾ 그러나 D의 출장 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³⁴⁾에 의하면 당시 D는 2일 간 시외 출장으로 사무실에서 보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였으므로 보이고, 달리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1) 증거기록 3,284면, 3,298면~3,299면, 3,312면

32) 증거기록 3,237면, 3,265면, 3,284면, 3,298면~3,299면, 3,312면을 각 참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업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 각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33) 증거기록 5,878면(증거목록 282면)

34) 공판기록 중 2023. 4. 18.자 사실조회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참조.



위 순번 1 사업 관련하여 D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직접 담합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있는가요'라는 수사 검사의 질문에 '사업가치팀의 W이 상무보급 담당들(D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고 설명 드리겠다. 이 자료는 VDC-C 서면 심의에 대한 이메일과 첨부자료들인데,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본부장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잡음 없이 처리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³⁵⁾ 위 내용 자체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VDC-C 자료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D 자신이 그 자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D는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했기에 피고인이 그러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알았을 것이다'는 전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D가 2016. 3. 11.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2 사업 관련 VDC-B 심의결과서 등을 메일로 보낸 사실은 확인된다.³⁶⁾ 그러나 D는 검찰 조사에서 '이메일과 첨부 자료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⁷⁾ 따라서 별도의 설명 없이 그러한 자료만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는 검찰 조사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사업 관련하여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행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보면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진술³⁸⁾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4, 5 각 사업 관련하여 '위 관련 메일은 I이 발송한 메일이어서 I과 함께 진술을 하면 명확히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추후 일정을 잡아주면 I과 함께 조사 받겠다'라고 진술하면서³⁹⁾ 계속하여 추측성

35) 증거기록 5,875면~5,880면(증거기록 282번)

36) 증거기록 5,882면~5,883면(증거목록 282번)

37) 증거기록 5,873면(증거목록 282번)

38) 증거기록 5,889면



진술을 이어나가거나,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한 이후에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과연 D의 그러한 진술들을 진실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D의 요청대로 진행된 I과의 대질 검찰 조사 조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5 사업과 관련한 메일 자료는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사업과 관련하여 I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 자료들에도 직접적인 답합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단순한 수주 결과 요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① 그 외에 범죄일람표 각 사업 관련해서 D가 피고인에게 메일로 답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³⁹⁾ ②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각 사업에 관한 모든 VDC 결과보고서 등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VDC 자료를 볼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직원들이 답합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 'VDC에서 본건 사업의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어도, 나아가 '본건 답합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 E도 '피고인이 VDC 자료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진술한 점⁴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찰담합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타사회선 임차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A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해 본부장인 피고인이 타사회선 임차비용과 관련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결재

39) 증거기록 5,891면

40) 범죄일람표 순번 6, 7 각 사업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이 답합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메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91면). 나머지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일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일에 불과하다.

41) 공판기록 794면



서류 등에 '타사의 회선임차가 금지되어 있는 사업'이라거나, '실제 회선임차가 없는 사업'이라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들 서류를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1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아닌 D가 결재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하여 F은 원심에서 '당시 저도 결재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도 그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없었던 위치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⁴²⁾ 범죄일람표 순번 4, 5 관련한 각 지출결의서 결재구조는 '팀장-담당-본부장' 순서로 올라가는데 위 각 문서의 결재 시점에 조직변경이 되어 D가 아닌 Y가 형식적으로 결재하기도 하였다(실제로는 D가 담당으로 위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Y⁴³⁾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타사 회선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임차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임차비는 VDC 심의대상으로 심의자료에 그 내역이 첨부되며, VDC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A가 해당 사업에 입찰 할 수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타사 입찰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리스트화를 하고 거기 사업성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임차비가 발생한다면 사업비 산정내역에 임차비가 포함되어서 심의를 받게 된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Y의 증언 내용에다가 ① 피고인이 그 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 ② VDC 등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 위배 사항(입찰담합, 시장거래가 미준수, 내부거래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VDC 통과가 되어 'VDC 심의완료'라는 내용 정도의 결과만 보고받는 입장에 있는 본부장으로서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42) 공판기록 763면

43) 증언 당시 A의 공공고객본부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⁴⁴⁾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D도 원심법정에서 '회선 임차비 지출 결의 관련 전결권자는 담합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⁴⁵⁾까지 더하여 보면, 타사 회선 임차 사실 및 회선임차 비용 지출 서류에 결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담합을 인지하고 승인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본부장으로서 주재하는 주간 회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주간회의에는 담당 및 팀장 등 20명 내외 정도가 참석하여 각 사업의 진행 개요 등을 살펴보는 데, 위 본부가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사업들의 현황이 그 자리에서 보고된다. Y, F,⁴⁶⁾ D⁴⁷⁾는 모두 위 주간회의에서 담합 여부 등이 보고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D는 원심법정에서 '주간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이 사건 각 입찰담합 과정에서 발생한 유찰 사실의 배경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므로 다른 이유를 대서 유찰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간회의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 개요만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주간회의에서 수주 실적에 공이 높은 직원들을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격려 등은 흔히 상급자가 부하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을 치하

44) Y는 위 증언과정에서 '실제 담합이 있던 자료와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로 진행하며 정당하게 타사 회선 임차해 발생한 자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도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고, 실제로도 정상적인 경쟁입찰 방식의 사업에서 회선을 임차한 사례도 여러 존재한다(증거기록 6,491면~6,492면, 6,487면).

45) 공판기록 656면

46) F은 원심에서 '실제 주간 회의 시간에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761면).

47) 공판기록 691면



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 부족하다.

4) 검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사업의 담합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순번 6 내지 7 사업도 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순번 1 내지 5 선행 담합행위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선행 담합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높은 투찰율로 입찰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도 입찰 담합을 의심해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E⁴⁸⁾이 원심법정에서 '투찰율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Y도 원심법정에서 위 E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⁴⁹⁾ ③ 투찰율 자체보다는 투찰율이 높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의 보고를 받아 이 사건 각 입찰담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8) 공판기록 783면

49) 공판기록 965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사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파기사유는 결과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의 중 2020고단7901 사건의 피고인 주식회사 A 대한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무죄 부분과 2020고단3650 사건의 판시 각 죄가 제37조 전단 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6. 결론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한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20고단 7901 사건의 범죄사실 및 해당 별지 범죄일람표를 모두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⁵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주식회사 A)

50) 이 사건 입찰 담합의 행위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C, G이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처벌됨에 따라 피고인 A는 동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그 이익을 나눠가진 사안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입찰절차를 방해하여 국가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으며,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므로 엄히 처벌할 것이다.

원심이 언급한 것처럼, 특히 피고인은 공공고객본부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직원 등을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이 윤리준법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으로 나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진정으로 그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당심에서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점(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7901)

원심판결 중 2020고단7901호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입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27

방해의 각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나.항 및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지정 _____

 판사 이태우 _____

 판사 이훈재 _____